

의안번호	2213585
의 퇴 인	민홍철의원
회 답 일	2026. 1. 15.
추계번호	25B5597

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 2,700만원(연평균 1억 2,500만원)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(안 제7조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항공종합정비업 발전위원회 (안 제8조)	5	5	5	5	5	27	5
합 계	205	105	105	105	105	627	125

주: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·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금액, 실태조사의 주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, 제8조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실태조사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4	안 제8조(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)	항공종합정비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함(제3항)	의무규정
		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(제4항) 1. 기획재정부·국방부·산업통상부 차관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보 3. 항공정비·항공안전·방산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	의무규정
		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음(제9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9조(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및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특화단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항공정비특화단지 등의 조성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
6	안 제12조(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1. 국제항공 운수권(「항공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운수권을 말한다)의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·배분 시 가점 2.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감면 3.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 비용 우선 지원	재량규정
7	안 제1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세제 지원)	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에 참여한 항공종합정비업자 및 제12조에 따른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·보조·출자·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는 항공종합정비업자가 외국 원제작사와의 합작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국내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		국가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와 협력하여 항공종합정비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,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음(제3항)	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15조(기술개발 촉진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1.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2.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사업 3.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협력,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 4.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 사업 5. 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9	안 제16조(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(이하 “항공종합정비기술자”라 한다)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관, 시설 또는 단체를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10	안 제17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정부는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항공종합정비업자가 해외 항공정비 업체·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해외법인 설립, 합작투자, 국제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·컨설팅·보험·보증 등 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18조(항공정비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실적 및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체계(이하 “항공정비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2	안 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,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)	○	•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6조(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등)	—	• 미대상 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은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국토교통부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므로,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	•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
4	안 제8조(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)	○	•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— 다만, 제정안(안 제8조제9항)은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 수 및 역할,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 구성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우므로,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는 제외함
5	안 제9조(항공정비특화단지 등 지정 및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·지원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지정 개수, 운영 활성화 및 조성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6	안 제12조(해외발주정비업 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 의 발주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 는 저비용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 점에서는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수, 공 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7	안 제1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세제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비용항공정비 협의체에 참여한 항공종합정비업자, 해외발주정비업무 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,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국내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항공종합정비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· 기술적 지원을 하고,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시 세제지원을 하며, 국가가 항공종합정비업 전용 펀드 를 조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·기 술적 지원 및 세제지원의 내용 및 규모, 항공종합정비업 전용 펀드에 대한 국가의 출연·출자 규모 등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 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
8	안 제15조(기술개발 촉진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－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개조 및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였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개요</th><th>2025</th></tr><tr><td>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(R&D)</td><td>항공기 개조 및 인증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선진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노력 및 항공정비(MRO) 등 국내 항공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</td><td>3,311</td></tr></table> 주: 2026년 예산 미편성 자료: 국토교통부	사업명	사업개요	2025	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(R&D)	항공기 개조 및 인증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선진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노력 및 항공정비(MRO) 등 국내 항공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	3,311
사업명	사업개요	2025							
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(R&D)	항공기 개조 및 인증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선진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노력 및 항공정비(MRO) 등 국내 항공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	3,311							
9	안 제16조(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양성기관의 지정 개수,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경비 및 국가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0	안 제17조(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해외 항공정비 업체·기관 발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해외법인 설립, 합작투자, 국제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·컨설팅·보험·보증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정부 등의 지원 내용 및 규모, 지원 대상자의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1	안 제18조(항공정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비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항공정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2	안 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위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 - 제정안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유사 사례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유사사례명	실시년도	예산
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2023	200
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2024	90
평 균		10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 결과)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,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	100	-	-	-	-	100	2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유사 사례(드론 산업 실태조사)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－ 제정안은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의 실시 주기를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유사 사례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유사사례명	실시주기	용역 내용	소요예산
드론 산업 실태조사	매년 실시	드론 산업 현황, 중장기 수요전망 등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	100 (2025년)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 결과)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,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주: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의 주기,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(안 제8조)

- (위원회 구성) 제정안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,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5명, 비상임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은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(항공정책위원회¹⁾)를 참고하여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(국토교통부장관) 1명, 상임위원 5명(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관보), 비상임위원 9명(민간 전문가)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구성(안)

구 분	위원 수	위원 신분	비 고
위원장	1명	국토교통부장관	• 제정안에 명시
상임위원	5명	재정경제부, 기획예산처, 국방부, 산업통상부, 외교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관보	• 제정안의 규정 및 유사 사례의 위원 구성을 참고
비상임위원	9명	항공정비·항공안전·방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	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회의 개최 수)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유사 사례인 항공정책위원회의 경우 연 3회 회의 개최
- (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)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1) 항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위원장(국토교통부장관) 1명, 상임위원(재정경제부·외교부·국방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업통상부·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우주항공청장) 7명, 비상임위원 13명(민간전문가) 등 총 21명으로 구성됨

2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하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등은 별도로 편성함(기획재정부,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5. 5. p.222.)

- (추계 결과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를 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,700만원(연평균 54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9	9	9	9	9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3	3	3	3	3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5	5	5	5	5	27	5

주: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·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금액, 실태조사의 주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